

의안번호	제 606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356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5월 15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606
----------	-----

제출연월일 : 2017년 5월 1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017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란 외자 유치가 무산된 2조원은 민선 5~6기 총 투자유치실적 56조 475억원의 3.6% 수준으로, 이는 통상 충북의 경우 MOU 체결 후 투자포기 평균비율인 13% 범위 내 수준입니다. 더욱이 MOU 체결 후 투자포기는 전적으로 이란 측 사정이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포기되었다는 이유로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업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결국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MOU 체결은 통상 비밀유지 보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행여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면 기 투자하였거나

투자 중에 있는 다수 기업들로부터 충청북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기업들로 하여금 충북에 대한 반기업 정서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일으켜 이는 결국 충북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 7.21㎢에서 충주에코폴리스 2.33㎢는 전체 면적의 32%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4.88㎢(전체면적 7.21㎢의 68%)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상 추진 중인 나머지 구역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들의 투자포기 내지 향후 투자 예정기업들의 투자 기피현상이 확산하게 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特定事案)’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 그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그 조사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조사대상 기관을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등 3개 실국뿐만 아니라 필요시 관련 부서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결국 투자유치 부서 전체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와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결국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는 투자기업과의 협약 체결 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대외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정보 및 경영정보가 공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 이와 같이 투자정보가 만에 하나라도 공개된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외국인 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3. 결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충북에 대한 기업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실 투자유치 및 일자리가 감소되고 충북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조사 범위와 조사대상 기관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노출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그 책임 역시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6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생산공정흐름도·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